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456호 2023년 4월 5일(수)

입법예고

○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체계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예찰·방제단 설치,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다. 식물방제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전문교육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바. 예찰·방제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55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43,
속초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팀)
- 연락처 : 전화 033-639-2906, 팩스 033-631-6161,
전자문서 ley052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033-639-29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반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은 예찰·방제 업무 팀장으로 하고 단장을 보좌한다.
2.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관련 공무원,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행정·전문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농업인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찰·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